‘조기조정’이란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즉, 소장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준비)기일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대략 2~3개월)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기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이 배당된 날부터 45일 이내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원하면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조정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소송으로 이행함으로써 소송지연의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조정제도는 법관 주도형에서 조정위원 주도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정위원의 적극적, 주도적, 효율적, 신속한 책임조정이 요구되고, 형식에 자유롭고 사안과 당사자에 맞는 맞춤형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의 비밀유지 및 ‘조정과 재판의 분리’를 통한 윤리적 문제 해소와 당사자 사이의 솔직한 대화 촉진을 통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판결’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서 나아가 ‘재판’대체적 또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종국적인 분쟁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부 전체 역량을 다른 사건(조기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투입할 수 있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 조기조정 절차

① 조정회부

본안재판부는 사건분류 단계에서 조정할 사건을 조정담당 판사에게 조기조정에 회부한다.

② 조정사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조정담당 판사는 아래 유형의 각 조정위원에게 사건 특성과 당사자 맞춤형의 조정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법원 부속형 조정 (court-annexed mediation)		법원 연계형 조정 (court-connected mediation)
서울법원조정센터	서울중앙지법 비상임 조정위원	**외부조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센터,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등 8개 기관

③ 조정 실시 및 보고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조정위원은 1인이 주도적으로 사건처리 후 배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조정담당 판사에게 사무수행 보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로부터 1개월 한도로 기간연장허가를 얻어 조정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④ 조정사건 종국

조정담당 판사는 사무수행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종국 시 본안재판부에 통보 또는 소송이행을 하게 된다.

3) 조정 성공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의 경우 조정에 회부된 사건 중 조정 성공률은 약 32%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3. ‘조정중재센터 운영요강’ 주요내용 개요

1) 설치 목적